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761	
결재일자	2015.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에신괴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정희	김종호	권용대	이용식	代손정수	09/07 김영배
협 조	정무보좌관		윤경	털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계획

2015.9.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계획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민선6기 『마음이모여 마을이 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구현에 재정적 역량을 집중코자 함

I 2016년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 (지방세) 공시지가 인상, 감면 축소 등으로 소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 증가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년수준 유지 전망
- (시·군 조정교부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액 증가 전망
- (국·시비보조금)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지속 증가 예상

□ 세출여건

-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법정·의무적 및 경직성 경비 지속 증가 예상
- 민선6기 역점사업·공약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분담금 지속 증가
-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복지 분야 예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예산 소요 증가

- □ 재정여건 총괄
 - 2016년 세입은 소폭 증가 예상되나, 세출소요는 여러 분야에 걸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 세출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필요
 - Ⅱ 2016년 재정운용 방향
- □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하되, 긴축 예산편성 기조 유지
 □ 민선6기 효율적 구정 운영 수행을 위해 주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적·효율적 재원 배분
 □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강화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등
 □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 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반영

세 입

-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
- ②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
 -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 검토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산 매각
- ③ 신규세원 발굴로 세입 증대
 - 은닉 공유재산 적극 발굴 및 무상임대·유휴재산의 활용방안 강구
 - 공공시설 유휴공간 대관료 수수료 징수 등 세입원 적극 발굴
- ④ 국가정책사업 보조율 상향 지원 및 기준보조율 차등지원 등 개선사항 지속 시정요구

세 출

- ① 예산편성과정에서 전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
- 2 기존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 안전. 복지 등 지출 수요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 최대한 흡수
 - 자체점검을 실시, 중복·유사·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축소·통합· 페지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동일 효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 재설계
 - 사업효과 없이 연례적·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은 과감히 세출 조정, 사업 초기단계부터 낭비요인 적극적 제거
 -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발생 등 집행부진 사업은 연도내 실집행가능액만 계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 도모

③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지원 예산 편성 불가
- 2016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지급
- ④ 공약사업 및 계속사업 중 2016년 마무리사업은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지양, 시설 유지 등 안전과 직결되는 투자는 지속 추진

Ⅲ 2016년 주요 달라지는 내용

-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반영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의무화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시기 조정
 - 예산의 첨부서류 변경사항 적용

□ 『세입예산 과목구분 및 설정』개선
○ 기타수입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편성 근거 신설
□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개선 ○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출연토록 규정
※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개선 ○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건비 편성기준 제시
○ 기타 예산편성 과목 설정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반영
Ⅳ 2016년 예산안 세부편성지침1. 세입예산 요구
세입예산 편성 관련 유의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에 반영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예산편성 최근 3년간 세입징수 실적을 토대로 증·감 현황,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및 요구, 재정보전금 : 세무1과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 기획예산과
□ 순세계잉여금 추계 및 요구 : 재무과※ 부서별 집행잔액, 통장 잔고(세입내역) 확인 등 사전 가결산 후 요구
□ 국·시비 보조금 : 해당 부서

※ 가내시 통보액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 요구

2. 세출예산 요구

세출예산 편성 관련 유의사항

- 전례답습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근 3년간 산출내역별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제 예산만 요구 ※ 타당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
- 낭비요인 제거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자발적인 절감 노력 강구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자체적으로 정한 단가 등 준수

□ 사업예산(정책사업)

○ 편성대상 : 주요투자대상사업, 생성·소멸이 있는 소규모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성 경비

- 편성방법
 - 사업별 효과와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정확 하게 판단하여 요구(투자사업 우선순위 목록 제출)

· 1순위 : 법정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 2순위 : 공약사업 및 계속사업, 2016년 마무리 사업

· 3순위 : 신규사업 중 중점지원 분야

- 중기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예산반영 불가
- 부서별 '16년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방침 결재 후 예산편성 요구
- 3억원이상 기존 및 신규 투자사업은 사업설명서 별도 제출
-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모성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규모 이하 요구 원칙

□ 재무활동

○ 편성대상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비용

○ 편성방법 : 특별한 증액요인이 없는 한 비목별로 2015년도 수준 편성 요구

□ 행정운영경비

- 편성대상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편성방법
 - 인력운영비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 ※ 기준인건비 총괄부서 : 행정지원과
 - 소요 물량은 원칙적으로 2014년도 결산액을 참고하여 2015년도 결산 예상액 기준범위로 한정
 -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편성

3. 성과계획서 작성

- □ 국·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운영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통합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목표와 주요사업을 예산과 연계시켜 체계화함 으로써 성과 중심의 경영 측면이 강조된 성과관리 추진
 - 전략목표 설정 : 국별 1개 정도
 - 정책사업 목표설정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설정

※ 「지방재정법」제5조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2016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V

행정사항

1. 예산편성 추진일정

□ 예산편성 지침 통보

□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사업구조화 및 세입·세출예산 전산입력 2015. 9.21 한 ○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 2015. 9.30 한 ○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2015.10.15 한 2015.10.31 한 □ 예산안 조정 □ 예산(안) 보고 및 확정 2015.11.12 하 □ 구의회 사전설명 2015.11.17 한 □ 예산(안) 구의회 제출 2015.11.21 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 □ 예산(안) 구의회 의결 2015.12.21 한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2. 예산편성요구 제출자료

구 분	제 출 내 용
세입분야	 ○ 제출기한 : 2015. 9.21 ○ 2016년 세입예산 요구서(서식1호) - 전산출력물 제출 -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서식2호) - 워드작성 제출
세출분야	 ○ 제출기한 : 2015. 9.21 ○ 2016년 세출예산 요구서(서식3호) - 전산출력물 제출 ○ 세부사업설명서(서식4호) - 전산출력물 제출 ○ 3억원이상 투자사업 별도 설명서 제출(서식5호)-워드작성 ○ 정책사업 우선순위 목록 - 워드작성 ○ 제출기한 : 2015. 9.30 ○ 성인지예산서 - 전산출력물 제출 ○ 성과계획서 - 전산출력물 제출
기타 제출자료 (예산안 첨부서류)	 ○ 제출기한 : 2015.10.15 ○ 마을담당관 - 주민참여 의견서 ○ 감사담당관 -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생활보장과, 교통지도과 - 해당 특별회계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 - 해당 특별회계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구 분	제 출 내 용
기타 제출자료 (예산안 첨부서류)	 기획예산과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통합재정통계 보고서 ○ 재무과 -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 -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 공유재산조서 ○ 세무1과 - 지방세 지출보고서 및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행정지원과 -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2015.9.1기준)

3. 기타 유의사항

-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세수전망을 총괄 분석 세입예산 요구서 제출
 - 세입 해당부서 → 세무1과(수합검토) → 기획예산과에 제출
 ※ 세입자료는 2부를 작성하여 세무1과와 기획예산과에 각각 제출
- □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내시공문 등에 의한 계획된 재원이 예산에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
- □ 신규 투자사업. 경상사업은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 계획서를 제출

붙임 2016년 예산편성 세부지침 1부. 끝.